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채무 ①

Q

공동수급체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채무를 진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특정 구성원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하도급공사대금채무는 그 특정 구성원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인가?

A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아래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분담부분의 공사를 하는 것이다. 각 구성원은 하도급계약이나 자재구매를 단독으로 하기 때

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이 책임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이다.

공동수급체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공동수급체에 미치게 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된다. 공동수급체(조합)의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으며(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09조).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은 각각 단독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각 조합원이 조합의 통상사무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은 개별 구성원이 각자 체결할 수 있는 통상사무인가?

통상사무가 아닌 특별사무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통상사무란 특정한 조합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경미한 사무를 말하는데,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같은 행위는 통상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은 조합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상사무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